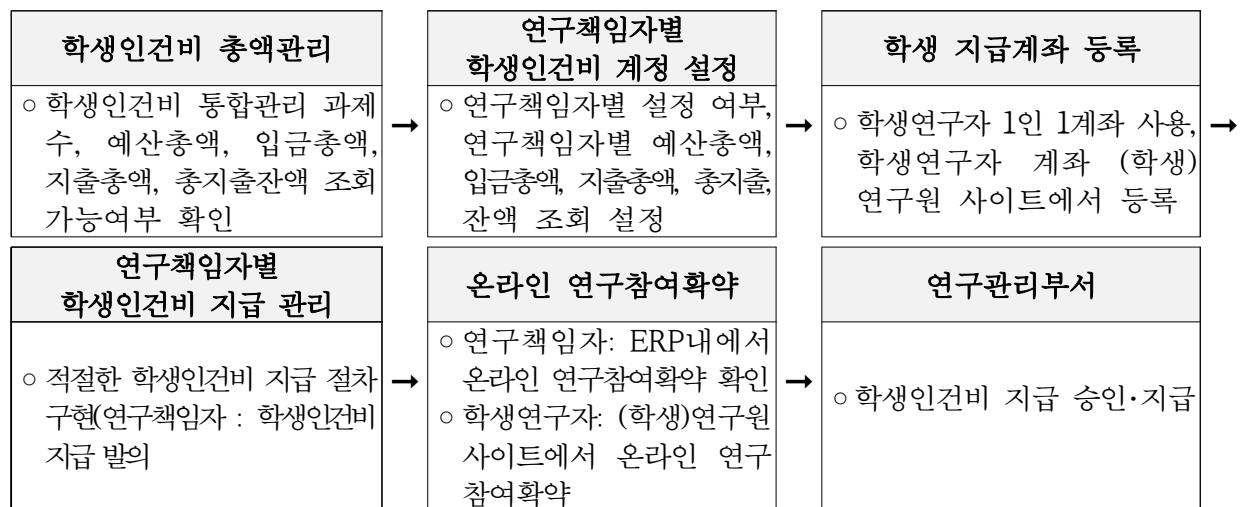


## 1. 업무개요

- 목적 :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투명성 강화, 학생연구자의 안정적 인건비 확보를 위해 '09년부터 도입·시행
- 시기 : 2016. 9월 ~ 현재
- 관련법령 또는 근거 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,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

## 2. 업무흐름도



## 3. 주요내용

-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내 연구관리 전담부서가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학생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별로 통합관리
- 학생연구자 인건비를 해당 연구기관 책임 하에 관리하고 잔액의 반납 및 정산 면제

## 4. 업무처리 유의사항

- 연구관리부서는 학생연구자 1인 1계좌를 지정하여 해당 계좌로만 인건비를 지급
- 본 과제 종료되는 연도의 12월 말까지 학생인건비 이관액의 50%이상 집행  
※ 월지급 상한액(인건비계상률100%): (학사) 1,300천원, (硕사) 2,200천원, (박사) 3,000천원